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/24

2019.07.16.제정 2020.03.03.개정 2020.07.14.개정 2020.09.24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2.28.개정 2022.07.29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08.30.개정 소판부서: 교무처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 대학"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3조에 의한 "강 사"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강사"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.

제2장 임 용

- **제3조(자격)** 강사의 자격은 대통령령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강 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.
- 제4조(임용시기)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**제5조(임용절차)** ① 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 - ② 신규임용과 특별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별표1의 「강사 신규 채용에 관한 내규」에 따른다.
 - ③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임용한다.<개정 2022.02.28., 2022.08.30.>
- **제6조(임용기간)**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- 1.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(6개월 이하)
 - 2.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사망 보직발령으로 인한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/24

임시강의 등

- 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 및 대학발전, 산학협력 등에 의거 임용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과(계열)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.
- <개정 2022.02.28.. 2022.08.30.>
- 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학기말까지로 한다.
- **제7조(임용제한)**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 할 수 있다.<개정 2022.02.28., 2022.08.30.>
 - 1.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
 - 2. 학과(계열) 및 본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 하다고 파단된 자
 - 4.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**제8조(임용취소) 총장**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22.02.28., 2022.08.30.>
 - 1.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
 - 2.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
 - 3.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과(계열)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 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
 - 4.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
 - 5. 신원조회, 성범죄경력조회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
- 제9조(당연퇴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 - 1. 임용기간 만료 후,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
 - 2.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
 - 3. 국가공무원법 제33조,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
 - 4.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. 단, 특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20.07.14.>
- 제10조(면직사유)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.
 - 1.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 - 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 - 4. 학과(계열)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3/24

- 5.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
- 6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는 경우
- 7.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8.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가. 제14조제2항에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
 - 나. 수업 및 휴 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다.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성적을 부여한 경우
- 9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- 10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
-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- 11. 강의평가 규정에 근거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<호 신설 2022.07.29.>

제3장 재임용

- **제11조(재임용)** ①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.
 -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<별표7>「강사 재임용 신청서」 및 관련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 - ③ 재임용 평가 시기는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, 재임용평가는 <별표8>의 「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」에 따른다.<개정 2022.07.29.>
 - ④ 강의평가 결과가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중 2개 학기 이상 겸임·초빙교원 및 강사의하위10%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 한다. 다만, 임용 학기가 3개 학기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⑤ <별표8>의 「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」를 충족한 자에게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.
 - ⑥ 재임용 적합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.
 - ⑦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「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」 또는 유·무선(전화, SNS 등)의 방법으로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07.29.>
 - ⑧ ⑥항에도 불구하고 임면권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할 수 있다.<개정 2020.07.14., <개정 2022.07.29.>
- 제12조(재임용 탈락 시 소명)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 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4/24

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-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.
- 제13조(재임용 거부)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 총장은 재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개정 2022.02.28., 2022.08.30.>

- 1.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이 폐지된 경우
- 2. 소속 학과(계열)가 폐과하거나 신입생이 없는 경우
- 3.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
- 4. 보직변경, 직위해제, 휴직, 출산휴가, 병가 등으로 인해 기존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
- 이 복귀한 경우
- 5.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6.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에 따라, 담당교과목의 변경, 폐지, 분반축소(합반)되어 담당 교과목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 <호 신설 2020.03.03.>
- 7. 신규임용 후 만 3년이 도래하는 경우 <호 신설 2022.07.29.>

제 4 장 직무 및 근로조건

- **제14조(의무)**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야 한다.
 -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.
 - 1. 수업과 관련된 문서(강의계획서, 평가계획서,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) 작성 및 준수
 - 2. "1호" 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
 - 3. 담당교과목에 대한 학습지도
 - 4.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: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,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, 장애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
 - ③ 「학칙」 제69조에 의한 교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,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
- 제15조(소속)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학과(계열)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

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.

제16조(교수시간)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5/24

- 제17조(처우) ① 임금은 본 대학 강의료 지급규정 및 임금계약으로 정하며 강의한 시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법률에 따른다.
 - ③ 강사의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(계열)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7조의1(수업배제) 강의평가 규정 제7조 ⑦항에 근거하여 학기말 강의평가 점수미달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학기 수업을 배제한다. <조 신설 2022.7.29.>
- 제18조(휴직) ① 강사는 「근로기준법」 에 따른 출산휴가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 -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- 제19조(휴직기간의 만료 등)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되다.
 -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 - <개정 2022.02.28., 2022.08.30.>
 -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,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제20조(휴직교원에 대한 처우)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제4장 징계

- 제21조(장계의 사유) 본 대학이 유지·경영하는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 - 1.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
 - 2. 금품·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기타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행위
 - 3. 성희롱·성폭력,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
 - 4. 수업결손, 학생민원 등 본 규정 제14조(의무)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
- 제22조(정계사유의 시효) 정계의결의 요구는 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범죄, 성매매, 성희롱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6/24

- 제23조(징계의 종류) ①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한다.
 -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 -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 -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- 제24조(강사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02.28., 2022.08.30.>
 -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25조(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 -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 -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6조(제척사유) 강사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제27조(위원의 기피 등)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 - <개정 2022.02.28., 2022.08.30.>
- 제28조(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) 강사의 임명권자가 강사에 대한 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정계대상자에게 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7/24

-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30조(징계의결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 - ④ 강사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31조(징계의결의 기한)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32조(비밀누설의 금지)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33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,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다만 <별표>의 서식 변경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20-2학기 재임용 대상자부터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8/24

소급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 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 로 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소급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9/24

<별표1>

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내규

제정 : 2019.07.01. 개정 : 2022.08.3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(강사 인사규정) 제5조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채용계획) 교무처장은 각 학과(계열)장과 협의하여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.

- **제3조(채용전형)** ①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며,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 - 1.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면직·보직발령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 - 2.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
 - 3.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긴급히 채용이 필요할 경우
 - 4. 기타 외부사업, 특별강의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
 - 5. 공개채용 후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까지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<호신설 2020.03.03.>

제2장 공개채용

제4조(채용공고) 강사의 신규채용 공고는 임용분야, 임용인원, 지원자격,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고 한다.)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 고한다.

제5조(제출서류)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0/24

- 1. 강사 신규채용 지원서
- 2. 자기소개서
- 3. 학위 증명서(전문학사, 학사, 석사, 박사 등)
- 4. 지원서 상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
- 제6조(심사위원회) ① 신규채용 시 학과(계열)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학과의 사정에 따라 면접심사 생략, 통합 등의 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학과(계열)별 심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학과(계열)의 전임교원이 1인일 경우 유사학과 및 유사전공 교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- ③ 교양과 강사 심사위원회는 교무처에서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임교원 및 유사전공 교원 으로 구성한다.
 -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학과(계열) 또는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제7조(심사위원의 제최·회피 등) 심사위원과 지원자가 친족(배우자, 혈족 8촌, 인척 4촌)인 경우 제척·회피하고,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교무처장이 결정한다.
- 제8조(심사구분)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기초심사 : 지원자의 강사 자격기준 심사 등
 - 2. 전공심사 : 지원자의 학력, 교육경력, 산업체경력과 채용분야의 전공유사성 심사 등
 - 3. 면접심사 :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및 교육 역량 심사 등(생략가능)
- 제9조(심사항목 및 심사기준)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<별표4>, <별표5>, <별표6>과 같다.
- 제10조(심사절차) 1.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따라 공정
 - 하게 평가를 실시한다.
 - 2. 지원자의 최종점수는 서류·전공평가 점수와 면접심사 평가점수의 합으로 한다.
 - 3. 최종합격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·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<개정 2022.02.28., 2022.08.30.>

제3장 특별채용

- 제11조(특별채용절차) 1. 제3조 2항의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과(계열)는 <별 표3> 「강사 특별채용 추천서」에 소속 전임교원 전원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 천한다.
 - 2. 교무처장은 자격을 심사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·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

<개정 2022.02.28.. 2022.08.30.>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1/24

제4장 기 타

- 제12조(심사결과 공개) 신규채용 지원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.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13조(비밀유지) 강사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원은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.
- **제14조(보칙)**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2/24

20 - 학기

<별표2>

채용연번

강사 신규채용 지원서

지원

20 - 학기

지원학과명				교과목					
			성명			연락처	휴대폰		
사진			생년월일				이메일		
			현 주소						
	구분		대학명		학과(?	전공)	Ť	학위 득일자	학위명
	전문학사								
학력 (전구)	학사								
(전공)	석사								
	박사								
	기관	며	부시	- 1 B		직위			직기간
	/1건	ď	Τ'	l o		777		시작일	종료일
교육·연구									
경력									
기관명		부서	1 1		직위		재?	직기간	
	/12	ď	Τ'	ı o	~~T1			시작일	종료일
산업체경력									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3/24

강사 신규채용 지원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<별표3>

강사 특별채용 추천서

-1-1																							j	성명			연락처	휴대	폰:		
사진			생	년월일				이메	일:																						
			현	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	대학	명		학과	(전공)		학위 취득일자		학위명																				
학력	전문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^{학학} (전공)	학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석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박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직	기관명			부서명		직위	뷔	7	대직:	기간																					
단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·연구	기관	-		부서명			직위			재직기간																					
									시작일		종료일																				
경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관명			부서명			직위		재직기																						
산업체경력	111			T'1 o			~int		시작일		종료일																				
	학	과		교과목명		담당시수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담당교과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OOOO 학과 특별강사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4/24

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
확 인 자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
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

학과(계열)장	교수명:	(인)
---------	------	-----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<별표4>

<u>강사 기초·전공심사 평가표</u>

지원학과	지원전공(교과목)	생년월일	성명

심사 항목	세부 심사 항목	심사결과
기초심사	-자격심사(대학교육 자격기준 규정) ★강사의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	□적 합 □부적합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지	} 2022.08.30.
페이지 수	15/24

	심사항목	배점	세부 심사 항목	심사점수
	① 학력	20	-박사취득 (20점) -석사취득 또는 석 박사 통합과정5차 이상(18점) -학사취득 (16점) -전문학사 취득 (14점) *최종학위만 인정하며, 동일학위에 대한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.	
전공 심사	② 교육경력	10	-교육경력 4년 이상 (10점) -교육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(8점) -교육경력 2년 미만 (6점) *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경력만 인정	
~i^ 	③ 산업체경력	10	-산업체경력 4년 이상 (10점) -산업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(8점) -산업체경력 2년 미만 (6점)	
	④ 전공적합성	20	-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 교육 산업체경력이 매우적합 (20점) -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 교육 산업체경력이 적합 (15점) -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 교육 산업체경력이 매우유사 (10점) -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 교육 산업체경력이 유사 (5점)	
	합계	60		

위와 같이 평가합니다.

년 월 일

위원소속 :	직위 :	성명	(인)
--------	------	----	-----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<별표5>

강사 면접심사 평가표

지원학과	지원전공(교과목)	생년월일	성명

		평점				
심사항목	A	В	С	D	ㅂ저하	합계
	(10점)	(8점)	(6점)	(4점)	부적합	합계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6/24

1. 전공의 이해			
2. 품성 및 태도			
3. 표현능력			
4. 교육자로서의 자질			
합계			

■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하여 작성함

■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1개 이상이면 임용 제외

|--|

년 월 일

위원소속: 직위: 성명 (인)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<별표6>

강사 재임용 신청서

소 속: 생년월일: 성 명:

<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 작성>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7/24

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학기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(강사): (인)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<별표7> <개정 2020.03.03., 2020.07.14., 2020.09.24.>

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

학과(계열)	생년월일	성명

평가 항목	항목배점	배점한도	취득 점수
-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※미준수시: 강좌당 -2점(1일 경과시)	10	0점~10점	
-성적입력 및 성적 공시기간 준수 ※미준수시: 강좌당 -2점(1일 경과시)	10	0점~10점	
-출결관리 준수	10	0점~10점	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8/24

※출결 미처리시: 강좌당 -2점			
-교과목 CQI 작성 기간 준수 ※ 미준수시: 강좌당 -2점(1일 경과시)	10	0점~10점	
-강의평가 95%이상 -강의평가 95%미만 90%이상 -강의평가 90%미만 87%이상 -강의평가 87%미만 84%이상 -강의평가 84%미만 81%이상 -강의평가 81%미만 78%이상 -강의평가 78%미만	45 35 25 15 10 5	0점~45점	
-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	10	0점~10점	
-대학지정 및 법정 의무 교육 참여:교육당 -2점	5	0점~5점	
합계	_	100	

-평가미달자 학과(부) 발전기여도 가점 10 10점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심사결과	적 합 (70점 이상) 🗆
(추가점수 포함)	부적합 (70점 미만) □

- 1)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.
- 2)강의평가점수는 임용기간 동안의 평균 점수로 평가한다.
- 3)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이상의 합의로 위원장이 작성한다.
- 4)재임용 기준 미달 자에 대하여 건학이념 및 대학발전 학과(부)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에 헌신할 경우에 한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할 수 있음.
-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.

평가점수 70점 미달자에 대한 의견 (가점 최대 5점)

(건학이념 구현, 대학발전 또는 학과(부)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 분야 공적 서술)

년 월 일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(인)

<별표8> <개정 2022.07.29.>

부산경상대학교 강사 임용 계약서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(이하 "대학"라 한다)과 _____(이하 "강사"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은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

	성명		사업의종류	교육
"대학"	사업체명칭	부산경상대학교	사업자번호	607-82-05457
	소재지	부산광역시	연제구 고분로 170,(연산동)	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9/24

"강사"	성명	주민등록번	<u> </u>	
3 ¹	현주소		전화번호	

제1조 (소속 및 직위) "대학"은 "강사"를 부산경상대학교 ()과(계열)에 강사로 임용 한다.

제2조(계약 내용)

- 1. 계약기간 : 20 년 월 일~20 년 월 일
- 2. 임금은 학기별로 개강 후 15일 이내 「강사 임금 계약서」(강사인사규정 <별표9>) 에 따라 별도 계약하며, 해당 학기의 주당 평균 강의시수에 따라 수업이 있는 다음 달 1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(단, 공휴일 등 기타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)
- 3. 방학 중 임금은 "2호"의 평균 강의시수에 따라 개강 전 1주분 및 종강 후 1주분을 지급한다.
- 4. 복무 등 근무조건 : 교육관계법령 및 강사인사규정 에 따름
- 5. "대학"은 "강사"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 - 가.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나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 - 다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학과(부)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
 - 마.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
 - 바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
 - 사.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 - 아.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자. 강사인사규정 제15조 2항에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
 - 차. 수업 및 휴 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카.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부를 작서하거나 성적을 부여한 경우
 - 타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 - 파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
- 6. "대학"은 "강사"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.
 - 가.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이 폐지된 경우
 - 나. 소속 학과(계열)가 폐과하거나 신입생이 없는 경우
 - 다.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
 - 라. 보직변경, 직위해제, 휴직, 출신휴가, 병가 등으로 인해 기존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이 복귀할 경우
 - 마.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제3조(휴일 및 휴가) "강사"는 정해진 강의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법위 내에서 "대학"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정해진 강의 일자가 국가 및 대학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"강사"는 별도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강의 장소와 업무) ①"강사"는 "대학"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강의를 시행하여야하며, 교육장소 변경 시 반드시 3일 이전에 교무처에 보고해야 한다.
- ② 강사는 해당수업과 수업에 관련된 수업지도만 담당하며, 수업시간에 한하여 총장의 지휘감독을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0/24

받는다.

- 제5조(출강일과 담당시수) "대학" 과 "강사"는 시간표 작성 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강의 요일과 담당 과목을 정하며 주당 강의 시간은 제1조에 따른다.
- 제6조(계약 해지 및 변경) "강사"는 임용과 관련하여 "대학"에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, 폐강 또는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임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재임용) 강사 인사규정의 재임용 절차를 따르며, 최장 3년까지 보장한다. 단, 강사 인사규정의 당연퇴직, 면직사유, 재임용거부사유 등에 의해 재임용(재계약) 아니 할 수 있다.

- 제8조(기타 계약 조건)① "강사"는 본 대학 법인과 대학의 제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"강사"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"대학"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③ "강사"는 제4조에서 정한 담당 강의(성적처리 포함)와 관련된 학생지도 업무와 별도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.
- ④ 다음 학기 강의시수 배정시 본 계약서 제2조(계약내용) 6호에 해당할 경우 강의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 제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- ⑥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관활 법원은 본 대학 소재지 관활 법원으로 한다.
- ⑦ "강사"는 본 대학에 계약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⑧ 강의평가 규정 제7조 7항에 근거하여 학기말 강의평가 점수미달 등에 해당할 경우 면직한다.

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관련규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여 "대학"과 "강사"는 각각 계약서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별첨: 강사 임금 계약서

<별표9>

부산경상대학교 강사 임금 계약서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(이하 "대학"라 한다)과 _____(이하 "강사"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은 임금계약을

체결한다.

" -> -> "	성명		사업의종류	교육
"대학"	사업체명칭	부산경상대학교	사업자번호	607-82-05457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1/24

	소재지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,(연산동)
"강사"	성명	주민등록번호
70 AT	현주소	전화번호

계약 내용

- 1. 계약 기간 : 20 년 월 일~20 년 월 일(6개월)
- 2. 교과목 및 강의 시수

교과목명	학점	강의시수/주	비고

- 3. 학기 중 강의료 : 평균 강의시수/주 x 4주 x 책정 강사강의료= 원
- 4. 방학 중 강의료 :
 - 개강 전 : 평균 강의시수/주 x 1주 x 책정 강사강의료=____원
 - 종강 후 : 평균 강의시수/주 x 1주 x 책정 강사강의료= 원
- 5. 급여의 지급방법 : 수업이 있는 다음 달 1일에 지급하며, 방학 중 임금은 다음 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.
- 6. 강의시수가 없는 경우 학기 중 강의료와 방학 중 임금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. 다만 학기 중 폐강 경우에는 개강 전 임금은 지급할 수 있다.

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여 "대학"과 "강사"는 각각 계약 서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<별표10>

00000과 개설교과목 강의 배정 계획서

(2019학년도 2학기)

	개설예정 교과목 (교육과정 편성 기준)					직급별 -	교원 배정 계획		비고
학년	이수 구분	과목명	학점	시수	개설반	성명	작급	배정 시수	u <u>1</u> 2.
1	전공	강사법1	2	2	А	홍길동	전임교원	2	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2/24

1	전공				В	이순신	 전임교원	2	
1								2	
1	전공				A	홍길동	전임교원		
1	전공	· 강사법실무	4	4	В	이순신	전임교원	4	
1	전공	경기합결구 	4	4	С	김둘리	겸임교원	4	
1	전공				D	강사A	강사	4	
1	전공	강사법실무	4	4	С	나교수	강사	4	
1	NCS				А	강사A	강사	2	
2	NCS	기업운영	2	2	В	강사B	강사	2	
2	NCS				С	강사C	강사	2	
개설시수 합계			24		배정시수	는 합계	24		

(2020학년도 1학기)

	개설예정 교과목 (교육과정 편성 기준)					직급별 .	교원 배정 계획		ר נט
학년	이수 구분	과목명	학점	시수	개설반	성명	작급	배정 시수	비고
	개설시수 합계					배정시-	· 수 합계		

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3/24

<별표11>

강사 채용 계획서

(학과)

1. 강사 채용 계획 인원 : 총 00명

	2019-2학기 배정 교과목 내역		2020-1학기 배정 교과목 내역			기타	
구분	담당교과목명	학점	배정 시수	담당교과목명	학점	배정 시수	(우대사항)
71.11	ㅁㅁ경영학실습	2	2	ㅇㅇ보건학 실습	2	2	박사학위소지자
강사 A							000자격증 소지자
강사							
В							
강사							
С							
71.11							
강사 D							
강사							
Е							

상기와 같이 강사 채용 계획서를 협의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
 확 인 자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
획인 사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
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	학과(계열) 교수명:	(인)

학과(계열)장	교수명:	(인)
1 1 1 1 = 7 0		(L /

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3-1-92
제정일자	2019.07.16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4/24

<신 설 2022.07.29.>

<별표12>

강사 재임용 거부 사유서

사 번	성 명	
소 속		

위와 같은 사유로 강사 재임용을 거부합니다.

년 월 일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